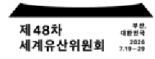




기후에너지환경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확인서 송부(제2026-01-039호, (주)대영바이오에너지)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3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확인서를 붙임과 같이 발급하오니,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확인번호	신청인	규제특례 확인대상	유효기간	확인연월일 (심의일자)
제2026-01-039호	(주)대영바이오에너지	식물성 잔재물 및 농업부산물을 재활용한 고발열량·저회분 바이오 생활연료제품	책임보험 가입하고 사업개시확인서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	'26.4.30.

※ 규제특례확인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공고(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-612호)

붙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확인서 1부(원본 우편 별송). 끝.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


수신자 주식회사 대영바이오에너지,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

주무관

임하숨

시설사무관

권용락

과장

전결 2026. 6. 18.

장이재

협조자

시행 자원순환정책과-3128

(2026. 6. 18.)

접수

우 30103

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순환국 자원순환 / mcee.go.kr

정책과

전화번호 044-201-7350

팩스번호 044-201-7394

/ hslim28@mcee.go.kr

/ 비공개(5,6,7)

K-헤리티지, 어제의 유산에서 내일의 자부심으로